



# 한국형 헤지펀드, 12월 중순 출범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금융위는 12월 5일 13개 자산운용사의 헤지펀드 운용 적격을 통보하였으며, 12월 23일까지 헤지펀드 상품 등록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힘.

- 12월 12일까지 증권회사의 프라임브로커<sup>1)</sup> 적격 통보도 완료될 예정이며, 12월 중 증권회사, 투자자문사의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 절차도 개시될 것임.
- 또한, 헤지펀드 운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이 이미 완료되었으며, 향후 증권대차, 전문인력 양성 등 관련 인프라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임.

■ 한국형 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출범을 앞두고 「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관련 모범규준」이 마련되어 12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임.

- 동 모범규준은 헤지펀드와 투자자 간 계약서 및 프라임브로커 계약서(PBA) 등에 대한 표준안을 제시함.
- 위험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, 헤지펀드 운용 부서의 사무공간 분리 및 임직원 겸직 제한 등 이해상충방지 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함.
- 운용사의 자기 헤지펀드 투자 시 스톱투자 방지를 위하여 동일 헤지펀드에 운용사 자기자본의 10%를 초과하거나 자기가 운용하는 전체 헤지펀드에 자기자본의 50%를 초과하는 투자를 제한함.
- 재간접 헤지펀드의 경우 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을 1억 원으로 설정하고, 5개 이상의 헤지펀드에 분산투자하도록 운용기준을 마련함.
- 프라임브로커 업무 관련 준법감시체제를 강화하고,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하기로 함.
- 제도 도입 초기 과도한 신용창출 방지와 적정한 위험관리를 위하여 프라임브로커가 헤지펀드로부터 받은 담보를 활용한 신용공여 금액을 자기자본 범위 이내로 제한함.

(헤지펀드와 프라임브로커 관련 모범규준 제정 등, 12/6)

1) 헤지펀드 설립 지원부터 자금모집, 운용자금 대출, 주식매매위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를 말함.